

K SOX Newsletter

January 2023
삼성 KPMG K SOX TFT

목차

- Section I. Law & Regulation 2
 - 1.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포 (2023.1.17 일부개정, 2023.1.17 시행) 2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2.12.22~2023.2.1) 3
 - 3.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2022.11.4) ... 5
 - 4. 금감원,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2023.1.16)..... 6
 - 5.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개선방안 확정 예정 - (금융위원회, 2022.12.14) 7

- Section II. Articles 8
 - 1.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저널」 제 22 호..... 8
 - 2. 삼성 KPMG,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 9
 - 3. 삼성 KPMG,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 4th Survey..... 10
 - 4.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영문 요약 자료 10
 - 5.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서 1100 영문 번역본..... 11

- Section III. Q&A 11
 - 1. 자산 1 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新모범규준 적용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2.10.27) 11
 - 2. 분할 후 존속법인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적용 여부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2022.11.29) 12

- New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행사..... 13
 - 1.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13

Section I. Law & Regulation

※ 제목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1.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포 (2023.1.17 일부개정, 2023.1.17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1) 주요 내용

종전에는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여 인증수준을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

(2) 신규대조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p>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p> <p>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p>	<p>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p> <p>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p>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p>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p>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2.12.22~2023.2.1)

2022년 10월 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함

(1) 주요 내용¹

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 축소(안 제4조)

- 원칙적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판단 기준을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1천억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1천억원
 - 상기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천억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안 제9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에 맞게 축소
-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비상장회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축소(안 제15조)

-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신규대조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¹ 본 뉴스레터 본문에는 일부만 발췌하여 기재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여 원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 가능

<p>1천억원을 말한다. 〈신 설〉</p> <p>〈신 설〉</p>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1천억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1천억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천억원 <p>②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1. 2. (생략) 〈신 설〉</p> <p>〈신 설〉</p> <p>3. (생략)</p> <p>② ~ ⑩ (생략)</p>	<p>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다. 금융회사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6명 미만인 회사 5. (현행 제3호와 같음)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② (생략)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④ ~ ⑥ (생략)</p>	<p>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 <p>④ ~ ⑥ (현행과 같음)</p>

3.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2022.11.4)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2022년 7월 26일~10월 18일)하여,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함

(1) 주요 내용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 강화 •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휴가 제도 • 직무분리 제도 • 내부고발자 제도 •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2) 향후 계획

- 은행연합회는 동 혁신방안을 금년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 금감원은 2023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전산구축 등)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동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갈 계획
-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2022년 11월 1일 시행)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 확대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4. 금감원,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2023.1.16)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위험업무(PF대출/개인사업자대출/자금관리/수신업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 사고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PF대출의 경우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함

(1) 주요 내용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	취약한 내부통제체제 및 통제기능未작동	내부통제조직의 형식적 운영 및 사고예방조치 미흡	내부통제 준수 문화未 정착 및 업계자정기능 취약
-------------------	----------------------	----------------------------	----------------------------

저축은행 업계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4대 高위험업무 사고예방대책 마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준법감시 등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PF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개인사업자대출 사고예방대책 마련 자금관리업무 사고예방대책 마련 수신업무 사고예방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 문서보안 강화 및 전결제도 취약점 보완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방지능력 제고 기타 취약 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역량 제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실효성 제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 유도

(2) 향후 계획

- 개별 저축은행은 2023년 1분기 중 금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²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

²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단말기IP-업무담당자 연동제 도입, 생체인증시스템 도입 등

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

▲ Back to Top

5.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개선방안 확정 예정 - (금융위원회, 2022.12.14)

지난 2022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함

(1) 간담회 개요

- 일시: 2022년 12월 14일 (수) 14:00~15:00
-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금융감독원) 정우현 감독조정국장, 감독조정팀장
 -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2) 주요 논의내용

-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주요내용 〉

(대표이사)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면책

(이사회)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이사회 감독의무 명확화

(담당임원) 중대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방지 등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금융업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

사회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함

- 이러한 책임 강화방안은,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짐
-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된 점, 대표이사 및 임원이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결과만으로 책임으로 귀결하지 않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6개 협회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에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이 명확해야 함
-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건의하였으며, 내부통제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금융당국은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 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임

▲ Back to Top

Section II. Articles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1. 삼성KPMG, 「감사위원회 저널」 제22호



ACI Insight	2022년 지배구조 평가 결과와 감사위원회 우선과제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유의사항 강화된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위원)의 대응방안
Depth Interview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22년도 주요 이슈와 23년 활동 제언
Opinion Leader's View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과제
Beyond Data	국내 상장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주요 애로사항 분석 및 기업과 감사위원회를 위한 제언
Law & Regulation	소규모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Event/News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채널 OPEN

▲ Back to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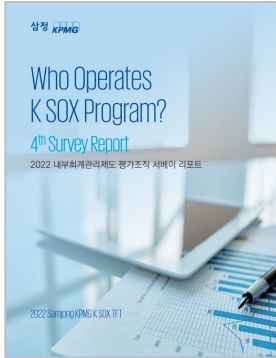
2. 삼성KPMG,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



- 2021년에 한국과 미국의 비적정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취약점은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과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임
- 한국에서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중요한 취약점 사유가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 상반기 횡령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6% 가 증가하였음
- 비적정 사유에 '자금통제 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서는 11.2%이나 미국에 서는 0.3%에 불과함
- 최근 한국의 감독 기조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업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Back to Top

3. 삼정KPMG,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 4th Survey



- 응답기업의 74%가 ICFR 평가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 팀은 평균 2.5명으로 구성
- ICFR 평가조직 최고책임자가 CFO인 경우는 67%
- 응답기업의 52%가 연결 ICFR 평가조직으로 본사 ICFR 조직을 활용
- 응답기업의 74%가 감사(위원회) ICFR 감독 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 Back to Top

4.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영문 요약 자료



- 보고서 영문 제목: The Summary of the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Korea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국내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Work에 대한 해외 종속회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영문화함

Chapter 1. Introduction

1. Objective and Scope
2. Adoption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3. Definition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4.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for Consolidation Purposes
5. The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Korea: Brief History
6. The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Korea: Structure

Chapter 2.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Design and Operation

1.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Conceptual Framework for Design and Operation
2. Principles Associated with Each Internal Control Component, Points of Focus and Relevant Approaches

Chapter 3.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Evaluation and Reporting

1. Management Guideline for Evaluation and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2. Approaches for Evaluation and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Back to Top

5.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서 1100 영문 번역본

Korean Standard on Auditing 1100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able of Contents	
	Paragraph
Introduction	
Scope of This ISA	1-2
Effective Date	4
Objectives	5
Definitions	6
Requirements	
Preconditions for the Audit of ICFR	7-8
Reporting a Weak Assessment	9
Integrating the Audit of ICFR With the Financial Statement Audit	10-15
Planning the Audit of ICFR	16-22
Using a Top-Down Approach	23-25
Testing Controls	26-45
Identifying Deficiencies in ICFR	47-51
Subsequent Events	52-55
Concluding Procedures	56-65
Reporting on ICFR	66-71
Report Modifications	72-83
Special Topics	94-102
Application and Other Explanatory Material	
Exhibit A—Illustrative Reports	
<small>ISA 1100,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ISA 200, Overall Objectives of the Independent Auditor and the Conduct of an Audi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small>	

- 해외 부문감사인 등이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영문 번역본을 마련
- 이와 함께 감사기준서 1100과 PCAOB AS 2201 간 비교 설명 자료도 준비

▲ Back to Top

Section III. Q&A

본 섹션의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삼정KPMG는 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등에 필요 시 반드시 유권기관의 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新모범규준 적용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2.10.27)

Q.

- 당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이며, 법률 개정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어 기존과 같이 검토를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사는 2023년부터는 新모범규준을 적용하여 통제기술서(RCM)등의 문서화가 고도화(update)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舊모범규준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함

A.

-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는 적용의견서 문구에 따라 2023년부터 新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함

[근거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문단 1에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후략)

▲ Back to Top

2. 분할 후 존속법인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적용 여부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³, 2022.11.29)

Q.

- 당사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나, 2023년 1월 1일 부로 회사가 분할하여, 존속하는 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2조원 미만이 될 예정임
- 이 경우 존속법인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2023 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는지

A.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분할 전 법인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이므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

³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시점의 법인실체는 분할 전 법인이므로 분할 전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여부를 판단
- 외부감사법령상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없음

[관련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Back to Top

New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행사

1.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 행사 개요 |

- 일 시: 2023년 2월 10일 (금) 14:30 ~ 16:30
- 장 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 주 최: 한국회계학회
- 후 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행사 내용 |

시간	구분	프로그램
14:30	개회	[사회] 정남철 교수 (홍익대학교)
14:30~14:35	환영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14:35~15:25	주제 발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정석우 교수 (고려대학교)

		황문호 교수 (경희대학교) 오명전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최승욱 교수 (경희대학교)
15:25~15:30		휴식
15:30~16:20	토론	[좌장] 박종성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패널] *가나다순 강경진 상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송병관 팀장 (금융위원회) 윤재원 교수 (홍익대학교) 이광열 본부장 (한영회계법인) 이재형 팀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연욱 전무 (파크시스템스)
16:20~16:30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참가자
16:30	폐회	사회자

| 참가 신청 |

- 우측 링크 통해 사전 등록: <https://naver.me/xxAdAXQs>

| 안내 사항 |

-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으로 인정됨
- 참가비용은 없음
- 관련 자료는 현장 배포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문의 |

- 전화: 02-363-1648
- 이메일: kaa@chol.com
- 홈페이지: www.kaa-edu.or.kr

▲ Back to Top